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조 례

제1423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 조례	2
제1424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제1425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1426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제142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제1428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9
제1429호 :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21
제143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제143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1432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규 칙

제69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2
--	----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중구 조례 제1423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 기업의 지정)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중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중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공유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 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2.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3.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 4.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 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2. 질병이나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1.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1.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필요
- 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을 소유가 아닌 ‘공유’라는 방법을 통해 해결 하기 위한 공유촉진사업 지원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제1조~제5조 :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
- 제6조~제8조 : 공유촉진정책, 공유단체·기업의 지정, 보조금 지원 등
- 제8조~제16조 :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자격, 회의 등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24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기능 이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종합적인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5.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공공·작은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부터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⑤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21조 중 “입장”을 “이용”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7조 관련)

도서관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제17조 관련)

1.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문화강좌실	1회 3시간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준 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10% 가산 적용 (4시간: 41,000원 5시간: 52,000원) ○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본료의 50%를 받는다. ○ 사용가능시간대: 도서관 운영시간내 ○ 빔프로젝터 사용 시 별도 사용요금 부과 (1회 30,000원)
물품보관함	1칸당	월12,000원 (일400원)	
비 고	<p>사용료 환불</p> <p>가. 재해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환불</p> <p>나.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시 : 전액 환불</p> <p>다.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 50% 환불</p> <p>라.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 30% 환불</p>		

2. 수수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전자복사 및 프린터 인쇄	B5	30원	1면당 금액적용
	A4		
	B4	50원	
	A3		
회원증 발급	1매당	1,000원	신규 · 재발급
도서정리비용	1권당	1,000원	자료변상시부과

3. 수강료

구 분	대 상 자	수 강 료
어린이 교실	초등학생(만12세 이하)	월 30,000원 이하
청소년 교실	중 · 고등학생(만13세~18세)	월 40,000원 이하
성 인 교실	대학생 및 일반인(만19세 이상)	월 50,000원 이하
비 고	<p>1. 수강등록자가 수강신청후 교통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을 못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다.</p> <p>가. 개강 전 : 기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환불</p> <p>나. 개강 후 : 1)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p>2)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는 1)에 따라 환불하고,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환불</p> <p>3) 기타 환불 관련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구 구립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두며, 명칭은 중구 구립도서관 이라 한다</p> <p><신 설></p>	<p>제2조(설치) -----</p> <p>-----</p> <p>-----둔다.</p> <p>제2조의2(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p> <p>② 대표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기능외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도서관자료의 종합적인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p> <p>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p> <p>4.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p> <p>5.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p> <p>6. 공공·작은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p> <p>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7.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3조(정의)-----</p> <p>1.~7.(현행과 같음)</p> <p>8. “상호대차”란 도서관 이용자가 대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해당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른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도서관 간 이동하여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p> <p>① (생략)</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p>	<p>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p> <p>③~⑥ (생략)</p>	<p>----- -----, <u>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③~⑥ (현행과 같음)</p>
<p>제15조(시설사용 등) ①~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5조(시설사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u>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 여야 한다.</u></p> <p>⑤ <u>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u></p>
<p>제21조(<u>입장</u>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u>입장</u>을 제한하거 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p>	<p>제21조(<u>이용</u>의 제한) ----- -----<u>이용</u>----- ----- -----.</p>

현 행

[별표 1] (제17조 관련)

1.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시청각실 (다목적홀)	1회3시간	30,000원	○ 사용기준 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10% 가산 적용 ○ 사용가능시간대 : 09:00~18:00
비 고	사용료 환불 가.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80%를 환불할 수 있다. - 부속시설 사용전에 행사 또는 모임이 객관적으로 취소 되었음을 입증한 경우 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를 환불할 수 있다. - 부속시설 사용전에 도서관장이 시설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경우		

2. 수수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전자복사 및 프린터 인쇄	B5	30원	1면당 금액적용
	A4		
	B4	50원	
	A3		
회원증 발급	1매당	1,000원	신규 · 재발급

3. 수강료

구 분	대 상 자	수 강 료
어린이 교실	초등학생(만12세 이하)	월 30,000원 이하
청소년 교실	중·고등학생(만13세~18세)	월 40,000원 이하
성인 교실	대학생 및 일반인(만19세 이상)	월 50,000원 이하
비 고	1. 수강등록자가 수강신청후 교통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을 못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다. 가. 개강 전 :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 환불 나. 개강 후 : 수강료를 수업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수강한 일수에 해당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공제한 후 잔액 환불(단, 전체 수강기간의 50%를 초과하여 수강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개 정 안

[별표 1] (제17조 관련)

1.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문화강좌실	1회3시간	30,000원	○ 사용기준 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10% 가산 적용 (4시간: 41,000원 5시간: 52,000원) ○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은 기본료의 50%를 받는다. ○ 사용가능시간대: 도서관운영시간내 ○ 빔프로젝터 사용시 별도 사용요금 부과 (1회 30,000원)
물품보관함	1칸당	월12,000원 (일400원)	
비 고	사용료 환불 가. 재해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환불 나.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시 : 전액 환불 다.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시 : 50% 환불 라.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 30% 환불		

2. 수수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전자복사 및 프린터 인쇄	B5	30원	1면당 금액적용
	A4		
	B4	50원	
	A3		
회원증 발급	1매당	1,000원	신규 · 재발급
도서정리비용	1권당	1,000원	자료변상시부과

3. 수강료

구 분	대 상 자	수 강 료
어린이 교실	초등학생(만12세 이하)	월 30,000원 이하
청소년 교실	중·고등학생(만13세~18세)	월 40,000원 이하
성인 교실	대학생 및 일반인(만19세 이상)	월 50,000원 이하
비 고	1. 수강등록자가 수강신청후 교통사고,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강을 못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할 수 있다. 가. 개강 전 : 기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환불 나. 개강 후 : 1)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2)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는 1)에 따라 환불하고,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 환불 3) 기타 환불 관련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름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중구 구립도서관 명칭관련 규정과 실제 도서관 명칭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현 운영실정에 맞추어 조례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칭관련 규정(제2조) 개정 및 제2조의2 신설
 - 제2조(설치) : 명칭관련 규정 삭제(시행규칙에 별도 마련)
 - 제2조의2(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 「도서관법령」에 맞추어 내용 일부 개정
 - 상호대차의 정의, 사용자의 설비 등
-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별표 1】 개정
 - 부속시설 사용료 환불 및 빔프로젝트 사용요금 부과 명료화
 - 물품보관함 및 도서정리비용 규정 마련
 - 수강료 환불 기준(비고) 명료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25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생략)</p> <p>1. <u>자동계좌이체</u>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p> <p>2. 전자송달과 <u>자동계좌이체</u>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p> <p>② (생략)</p>	<p>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p> <p>① (현행과 같음)</p> <p>1. <u>전자송달</u>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u>자동이체</u> 방식에 따른 -----</p> <p>2. <u>전자송달</u> 방식과 <u>자동이체</u> ----- -----</p> <p>② (현행과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까지 세액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이체 세액공제대상 확대(제10조)
 - 세액공제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추가
 - 전자송달 납부신청만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
 -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로 함(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26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수당 지급대상자)”를 “(수당 등 지급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당 지급대상자”를 “수당 및 위문금 지급대상자”로, “1년”을 “계속 3개 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중구에 1년”을 “사망일 현재 중구에 계속 3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수당 지급대상자)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②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망자로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p>	<p>제11조(수당 등 지급대상자) ① 수당 및 위문금 지급 대상자----- 계속 3개월 -----</p> <p>-----</p> <p>-----</p> <p>-----</p> <p>-----.</p> <p>② ----- 사망일 현재 중구에 계속 3개월 -----</p> <p>-----.</p> <p>-----.</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 보훈대상자의 거주제한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수당 지급대상”을 “수당, 위문금, 사망위로금”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함
 - 제11조의 제목을 “수당 지급대상자”를 “수당 등 지급대상자”로 함
 - 제11조제1항의 “수당 지급대상자”를 “수당 및 위문금 지급대상자”로 함
 - 수당 등 지급대상자의 지급기준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줄임
 - 수당 및 위문금 대상자의 지급기준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으로 함(제11조제1항)
 - 사망위로금의 대상자의 지급기준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함(제11조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27호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중구”로, “1년”을 “3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이상의 참전 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2. (생략)	제3조(지원대상) ----- ---- 서울특별시 중구----- 3개월 ----- ----- 1. 2. (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위문금 등의 지원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의 거주제한 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거주 지역을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중구”로 명확하게하고,
- 지원대상의 거주 기간을 “계속 1년 이상”에서 “계속 3개월 이상”으로 개정(제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28호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월 10,000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이하인 세대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p>	<p>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가입자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등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며 조례가 규정 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 기준 금액인 10,000원을 상회하는 최저보험료가 설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지원 대상 기준의 상향 조정
 - 당초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월 10,000원 이하인 가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로 변경
 - ※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13,100원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29호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 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 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및 중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 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방송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 4. 중구민 및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전을 위한 사업
- 6.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중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고 언어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제4조)
-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제5조)
- 농인 등의 편의증진(제6조)
-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30호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신생아 출산가정”을 “임산부 및 신생아 출산가정”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출산영아 기준 1회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를 “출산영아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위험 임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 중인 사람으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절대 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이 표기되어야 한다.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산부
4.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산부
5. 그 밖에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

③ 제1항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례 제1397호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출산양육 지원기준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게 적용하며, 이전에 출생한 영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u>신생아 출산가정</u>에 대한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 <u>임산부 및 신생아출산가정</u> ----- -----.</p>
<p>제3조 (지원기준) ① (생략)</p> <p>②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후원받는 범위 내에서 <u>출산영아 기준 1회</u>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p>	<p>제3조 (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출산영아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u></p>
<p><신 설></p>	<p>제3조의2 (고위험 임산부의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위험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u>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고위험 임산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중인 사람으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u>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u>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이 표기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2.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산부 3.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서 <u>절대안정을 요하는</u>

<p>조례 제1397호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p> <p>이 조례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p>	<p><u>임산부</u></p> <p>4. <u>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산부</u></p> <p>5. 그 밖에 <u>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산부</u></p> <p>③ 제1항에 따른 <u>고위험 임산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u></p> <p>조례 제1397호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적용례) 별지 출산양육 지원기준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게 적용하며, 이전에 출생한 영아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p>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출산을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1회로 한정된 출산축하용품 지원 횟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출산가정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제1조)
- 출산축하용품 지원 횟수 규정 삭제(제3조제2항)
- 고위험 임산부에게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 1년 이상 거주한 임산부 중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함
- 2017.11.01. 개정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출산양육 지원금 변경사항의 적용대상을 2018.01.01. 이후 출생한 영아로 명확하게 함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31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72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미세먼지, 폭염, 한파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9.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조~제71조(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미세먼지, 폭염, 한파를 포함한다)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6.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 대책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9.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p>제3조~제72조(현행 제2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문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요즘 실시간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호흡기 및 온열질환 발생, 사망사고,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으로 인식하지 못해 효율적인 관리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와 폭염을 포함시켜 재난 및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 폭염, 한파”를 포함 시키고자 함.(제2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32호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 유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심리적 위험을 겪을 우려가 있는 공무원, 사회복지사, 비영리 단체 직원 등(이하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라고 한다)의 직무능력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기타 구청장이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6조 ~ 제18조 (생 략)</p>	<p>제16조(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 유가족 등과의 접촉으로 심리적 위협을 겪을 우려가 있는 공무원, 사회복지사, 비영리 단체 직원 등(이하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라고 한다)의 직무능력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의 현황을 조사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의 전문성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기타 구청장이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④ 제3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자살위험자 등과 접촉하게 되어 극도의 심리적 충격을 겪을 수 있는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 지원 조항 신설(제16조)
 - 구청장에게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의 직무능력 향상,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의무 부과
 -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의 현황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지원 사업
 - 전문기관에 자살 관련 업무 수행자 지원 업무 위탁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97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대표도서관의 지정) 조례 제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 대표도서관은 “가온도서관” 으로 한다.

제2장 운영 및 위탁

제4조(위탁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 운영·관리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관리·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리·운영위탁기간을 연장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4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이 수탁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 협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장비 및 자료의 목록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비 지원)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 구입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사업계획)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관 운영의 기본 방향
2.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서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 예산(안)

5. 그 밖에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도서관의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사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기준 및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도서관 이용

제11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각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자료의 정리 및 장서점검, 시설물의 보수,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의 연장·단축,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해당일 7일전에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이용제한) 관장은 조례 제 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열람 중 잡담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
5.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3조(회원가입)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증 발급 후 도서관에서 지정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② 회원 가입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서울특별시 거주자
- 2.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 재직자 및 학교 재학생
-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③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회원증 발급 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 1. 별지 제3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
- 2.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제14조(대출) 자료의 대출은 1인 1회 5권이며 대출기간은 1권당 14일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의 수·대출연장 등은 도서관의 규모 및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정한다.

제15조(대출제한)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1. 회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 2. 연속간행물, 각종 신문자료 및 비도서
-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관장은 자료의 연체자, 회원자격 상실자, 변상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내에서 자료 복사는 비치된 자료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장이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 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7조(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서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중인 자료를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경우, 해당 도서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우선 대출할 수 있다.

제4장 자료관리

제18조(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기증하고자 하는 자료가 공공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선정 기준)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는 사회 각계각층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 관외대출용도서, 독서회용 도서, 참고도서, 사무용도서, 훼손된 도서는 추가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 자료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4. 어린이, 청소년 등과 관련된 도서의 선정은 아동교육 및 청소년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한다.
5. 외국자료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저명한 사전류, 한국에 관한 자료 등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6. 간행물은 각 분야별로 정평이 있는 자료를 선정한다.
7. 비 도서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되, 기술적인 면의 우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장 문화사업

제20조(문화강좌 개설 등)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개설할 경우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기간 및 인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관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강좌 참여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도서관 명칭	위치
가온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4길 18 (다산동)
어울림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8길 66-35 (동화동)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2길 (약수동)

작은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도서관 명칭	위치
손기정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로 101 (중림동)
구정자료실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1층
회현동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46 주민센터 2층
광희동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03-9 주민센터 2층
필동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1 경로당3층
신당동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9길 10 경로당 2,3층
다산동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2길 89
약수동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32 약수교회 B2층
청구동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24길 23 문화마당 1층
신당5동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90길 42 유락경로당 2층
동화동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100 주민센터 1층
황학동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1길 52 주민센터 3층

중구구립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신청서(제4조관련)			처 리 기 간
			30 일
신 청 인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 탁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	
<p>「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중구구립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중 구 청 장 귀하</p>			
첨 부 서 류	1. 정관(규약),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중구구립도서관 관리·운영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제5조 관련)			처 리 기 간
			30 일
신 청 인		전 화 번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위탁연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구 구립도서관의 관리·운영위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중 구 청 장 귀하</p>			
첨 부 서 류	1. 정관(규약), 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제1호 첨부서류 생략		수 수 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회 원 가 입 신 청 서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성 명				ID (신규 / 변경)	1.
생년월일-남·여	. . . (남/여)				2.
이 메 일				비밀번호	
주 소	(자택)			(회사)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	
직장·학교명	(초·중·고·대학생 필히 기재)				
제 2 연락처	성명		관계		연락처
<보호자 동의서 - 신청인이 만12세 이하인 경우 작성 >					
본인은 _____ (신청인 성명)의 보호자로서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도서 분실시 변상 등 관련 규정을 _____ (신청인 성명) 대신하여 준수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_____ (신청인 성명)의 보호자 _____ (인)					
본인은 귀 도서관이 정한 대출기일, 분실 및 훼손 시 변상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_____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도서관 귀중					
<첨부서류>					
1. 본인 신분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2.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는 신분증(사원증 또는 명함) 3. 서울시 외 거주자로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신분증(학생증)					
<서울시 중구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 규정 >					
1. 하나의 회원카드로 가운데서관, 어울림도서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어린이도서관, 손기정작은도서관, 각동 작은도서관에서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출은 반드시 도서관 회원카드를 지참하셔야 하며, 가족 대리대출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혹은 의료보험증)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3. 대출 권수는 <u>통합전자도서관 합산 1인당 5권</u> , 대출기간은 <u>14일</u> 이며 도서반납은 대출하신 도서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약되지 않은 자료에 한하여 <u>1회 7일간 연장</u> 가능합니다. 4. 연체 시에는 연체 일수의 합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5.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연체 시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6. 연락처 및 주소는 반드시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7. 제2연락처는 본인과 연락되지 않을 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중구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 하십니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이용자 정보 이외에는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기 증 신 청 서 (제18조 관련)

1. 기증신청자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2. 기증신청목록개요

구 분	종 류	권(건)수	비 고
계			
도 서			
비도서			
기 타			

3. 신청취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본인 소유의 자료를 귀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가. 기증과 관련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나. 기증자료의 정리에 기증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 기증자료 중 도서관 자료의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증자료를 임의로 처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신청 및 동의인 :

(서명)

○○도서관장 귀하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중구 구립도서관 명칭관련 규정과 실제 도서관 명칭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현 운영실정에 맞추어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목적, 명칭위치, 대표도서관의 지정
- 제2장 운영 및 위탁(제4조~제10조)
 - 위탁신청, 관리·운영위탁기간의 연장신청, 관리·운영 협약, 운영비 지원, 예산 및 결산, 수탁자의 의무
- 제3장 도서관 이용(제11조~제17조)
 - 이용시간, 이용제한, 회원가입, 대출, 대출제한, 자료의 복사금지, 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 제4장 자료관리(제18조~제19조)
 - 자료의 기증, 자료선정 기준
- 제5장 문화사업(제20조~제21조)
 - 문화강좌 개설 등, 운영세칙